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김진영 의원 (찬성자 9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2047 호

다. 발의일자 : 2017. 8. 16.

라. 회부일자 : 2017. 8. 17.

2. 제안이유

- 현행 성능개선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하고 전문 분야 별분과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 적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.
- 존치실익이 없는 실무협의회 대신에 성능개선위원회 상위기구인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여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 조정과 결정 역할을 맡도록 함으 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성능개선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함(안 제7조).
- 나. 실무협의회 대신에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,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: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본 개정안은 현행 성능개선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하는 한편, 기존 실무협의회 대신 성능개선위원회의 상위 의결기구인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종합관리계획 수립및 재정 투입 등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과 결정이 이루어지도록보완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제7조	• 성능개선위원회(비상설)	• 성능개선위원회(상설)
		•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
		근거 마련
제8조	• 실무협의회(비상설)	•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(비상
		설)

■ 성능개선위원회 상설화 및 분과위원회 추가의 건(안 제7조)

- 현행 성능개선위원회는 5년 단위로 작성되는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 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'일시 적으로'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.
- 본 개정안은 이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, 현행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이 5년

단위의 주기성을 갖는다는 점과 계획 수립 후 변경이나 장애요 인 발생 등에 따른 상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
○ 또한,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, 대상 노후시설물별(교량, 터널, 철도, 건축물, 상·하수도 등)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.

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책위원회(약칭 기반시설총괄정책위 원회) 신설 건(안 제8조)

- 현행 조례 제8조의 실무협의회의 당초 설치목적은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안전총괄본부, 도시교통본부, 주택건축국, 시 투자기관 등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.
- 담당 공무원들 간에 업무의 효율적 소통을 위해 여러 실·국·본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려 했던 것이나, 본 개정 안을 통해 신설되는 성능개선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이를 폐지하고,
- 대신에 비상설 기구로 '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책위원회(약 칭 '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')'를 신설함으로써 성능개선위원회 의 상위에서 ①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최종 조정 및 결정, ② 종합관리계획 시행 중 애로사항 및 중간점검, ③ 종합관리계획 변경, ④ 노후기반시설 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및

장수명화 정책수립 등을 관장토록 하려는 것으로.

○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 1,2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, 그리고 관련 실·국·본부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명실상부한 도시기반시설 최고의 정책심의기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본 조례의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.

[참고]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) 신설안

- 안 제8조(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최종적인 조정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책위원회(이하 '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'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**위원장**은 **시장**이 되고, <u>부위원장</u>은 <u>행정 1·2 부</u> 시장이 된다.
 - ③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
 - 2. 시의 재정 업무관련 실·본부국의 장
 - 3.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실·본부국의 장
 - 4.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시 산하 투자기관의 장
 - 5. 제7조제2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 - ④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는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</u>한다.
 - 1.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
 - 2. 종합관리계획의 시행중 애로사항 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
 - 3. 기존 종합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(이 경우 성능개선위원회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)
 - 4. 노후기반시설 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정책수립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 - ⑤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<u>구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</u>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.